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형 지침

제정 2017. 10. 23. 개정 2018. 04. 23.
개정 2019. 04. 12. 개정 2019. 10. 29.
개정 2020. 05. 08. 개정 2020. 10. 26.
개정 2021. 11. 01. 개정 2022. 04. 13.
개정 2023. 10. 16. 개정 2023. 11. 21.
개정 2024. 07. 11.

1 목 적

본 지침은 「국립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에 근거하여 전임교원의 공개채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전임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3 공개채용 및 전형 관리 공통사항

1. 초빙분야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채용 심사를 진행한다.
2. 공개채용의 심사단계, 심사항목, 배점,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심사단계	심사항목		배점	합격기준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 여부		-	일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충족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대학·대학원 이수교과목 일치도(5점)	10점	6점 이상
		연구실적 일치도(5점)		
	연구실적	양적 평가(15점)	50점	-
		질적 평가(35점)		
전공심사 II	공개강의	강의계획의 적절성과 준비 충실도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확성	15점	30점 20점 이상
		강의의 능숙도 및 태도 질문처리 능력	15점	
면접심사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5점) 교수로서의 잠재력과 학과 발전 기여 가능성(5점)		10점	6점 이상
합 계			100점	60점 이상

3. 공개채용 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심사위원회, 전공심사위원회(1차·2차·3차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및 채용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전공심사위원회(1차·3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본교 소속이 아닌 자(이하 “외부 심사위원”이라 한다)로 하며, 외부 심사위원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위촉하도록 한다.
5.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의 전형 업무를 관장하게 하며, 교무처장은 공개채용 전반을 관리한다.
6.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앞서 서약서(서식 14)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된다.
 - 가.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나.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 연구자인 경우
 - 다. 그 밖에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심사위원은 제6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9. 지원자는 제6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총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10. 심사위원이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라 제척·회피·기피 되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무효로 하며,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다만, 제척·회피·기피 되고 남은 위원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외부 심사위원이 제척·회피·기피 되었을 경우 심사비용은 교통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1.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하였을 경우 총장은 해당 분야의 채용 전형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심사위원 위촉을 2년(당해 차수 제외) 제한한다.
12. 최종합격자가 제6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총장은 채용공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3. 심사 당일 사고 등의 사유(제척·회피·기피 사유 제외)로 심사위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 해당 심사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공심사위원회(1차·3차)의 전공심사 I(전공 일치도 및 연구실적)의 경우 본교 소속이 아닌 심사위원의 참석은 필수로 한다.

I. 기초심사 및 심사위원회

1. 구성

기초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무부처장, 교무과장, 교무과 인사주무 및 담당자, 산학연구과 연구실적 검증담당자로 구성한다.

2. 심사내용

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 여부

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3. 심사방법

가.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여부(합격/불합격)

- 1) 심사위원회에서 (서식 1)에 따라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 2) 심사위원회에서 '일치'로 심사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고, '불일치'로 심사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불일치'에 대한 근거를 '평가 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지원 자격 충족 여부(합격/불합격)

- 1) 심사위원회에서 (서식 2)에 따라 초빙공고 지원 자격(교육 및 연구경력, 연구실적, 최종학위 등 기타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연구실적 심사 시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를 반영한 '연구실적 개인별 확인표(서식 2-1)'를 작성한다.
- 2) 심사위원회에서 3개 분야 모두 '충족'으로 심사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고, 1개 분야라도 '미충족'으로 심사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미충족'에 대한 근거를 '평가 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심사진행

가. 기초심사 결과 1개 항목이라도 불합격으로 판정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나. 기초심사 합격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인 초빙분야의 경우에만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을 진행한다. 다만, 합격인원이 2배수 미만인 채용분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심사 I 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관련서식

- ①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여부 심사결과표 (서식 1)
- ②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결과표 (서식 2)

- ③ 연구실적 개인별 확인표 (서식 2-1)
- ④ 기초심사 총괄 집계표 (서식 3)

II. 전공심사 및 심사위원회

① 전공심사위원회(1차심사위원회)

1. 구성

- 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 나. 삭제

2. 심사내용

- 가.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
- 나. 전공심사 II (공개강의)

3. 심사방법

가-1.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10점

1)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이수 교과목, 학력 및 경력에 의한 평가	응모자의 대학, 대학원 이수교과목 중 초빙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의 일치 여부	5점
	응모자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졸업학과와 초빙분야의 일치 여부	
	응모자의 최근 연구 및 교육 경력과 초빙분야의 일치 여부	
연구실적에 의한 평가	응모자의 최종학위 논문내용과 초빙분야의 일치 여부	5점
	응모자의 연구실적 내용과 초빙분야의 일치 여부	

- 2) 심사위원별로 (서식 4-1)의 '평점' 란에 심사항목별 점수를 기재한다.
- 3) 평균평점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모든 심사항목에 적용)하여 산출한다.(서식 4) (다만,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하나를 제외한다. 이하 같음)
- 4) 평균평점 합계가 6점 미만인 응모자는 '전공 불일치'로 판정하고, 전공심사 II (공개강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2. 전공심사 I (연구실적): 50점

연구실적은 최종학위 논문과 최근 4년 이내(응모서류 마감일 전월 기준)에 발표된 연구실적물(15편 초과 불가)로서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목록의 심사우선순위에 의한 환산율 누계 양적 600%(질적 200%)까지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하며, 양적평가(15점)와 질적평가(35점)를 병행한다.

(다만, 연구실적 중 초빙분야와 관련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주제 및 내용이

상호 지나치게 중복된 경우 실적을 제외시킬 수 있음)

1) 양적평가(15점)

가) 삭제

나) 최종학위 논문 외 연구실적물 평가(15점)

(1) 심사위원별로 (서식 5-1)의 '취득점수' 란에 연구실적물별 평가점수를 기재한다.

(2)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취득점수 = 등급점수(a)x저자수 기준 인정률(b)x연구실적물 간 중복도 심사(c)

(가) 등급, 등급 인정기준 및 등급점수

구분	등급	등급 인정기준	등급 점수
논문	전문 학술지 A	국내·외의 전문학술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간행하며, 국제적인 학술지 인용색인 중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등에 등록된 국내·외 학술지와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말한다.	100점
	전문 학술지 B	국내·외의 전문학술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간행하며, 국제적인 학술지 평가기관 Clarivate Analytics에서 제공하는 인용색인 목록(Master Journal List)에 등재된 학술지중 위의 <전문학술지 A>에 속하지 않은 학술지와 'ELSEVIER'사의 인용색인 정보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말한다. 다만, SCOPUS 등재학술지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 SCOPUS 인정기준 - 인정(2종): Article, Review - 불인정(7종): Article-in-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 Editorial, Letter, Note - 조건부 인정(2종) · Erratum(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 Book Chapter(Scopus 저널 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pter는 정규논문으로 인정	75점
지식 재산권		국제특허, 국제품종보호권 등록	100점
		국내특허, 국내품종보호권, 국제 실용신안, 국제 소프트웨어, 국제 디자인 등록	75점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품종보호,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을 인정받는 등록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며, 신청 중인 것은 제외된다.	
실기 실적	실기 실적A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별표2> 중 "실기분야 연구업적 평가기준"의 150점을 초과에 해당하는 항목	100점
	실기 실적B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별표2> 중 "실기분야 연구업적 평가기준"의 150점인 항목	75점

(나) 저자수 기준 인정률

〈저자수에 따른 개인별 인정비율〉					
평가부문	총저자수	주저자, 교신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외	
		전문학술지A	전문학술지B	전문학술지A	전문학술지B
논문	1	100%	100%	-	-
	2	80%	80%	60%	60%
	3	70%	70%	40%	40%
	4		60%	30%	30%
	5		50%	20%	20%
	6 이상				10%
지식 재산권	n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업적 반영비율은 별도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함 다만, 지분비율이 없는 경우,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로 한다.			
실기실적	n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로 한다.			

(다) 연구실적물 간 중복도 심사

- ① 대표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연구실적들(학술지 논문 등) 간에 주제 및 내용상 상호 중복 여부 심사
 - ② 0.5 ~ 1.0 사이에서 0.1 단위로 점수 부여
 - ③ <삭 제>
- (3) 평균평점은 각 심사위원의 연구실적물별 취득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환산평점도(평균평점/600)x15으로 계산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서식 5)

2) 질적평가(35점)

가) 배점, 등급 및 등급점수, 평가기준

구분	배점	등급 및 등급점수	평가기준
최종 학위논문	5점	등급으로 구분하여 1~5점	1. 연구목적 2. 주제의 독창성 3. 내용의 충실도 4.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5. 논문(실기)내용과 초빙 분야와의 관련성
최종학위 논문 외	30점	연구실적물 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1등급(전문학술지A, 국제특허, 국제품종 보호권, 실기실적A): 10~15점 2등급(기타 연구실적물): 5~10점	

나) 심사위원별로 (서식 6-1)의 '등급', '등급별 평점'을 기재한다.

- 다) 심사위원별로 (서식 6-2)의 '취득점수'를 (저자수 기준 인정률 x 등급 점수)로 산출하여 기재하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라) 평균평점은 심사위원별 취득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 반올림하고, 평균평점 합계도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서식 6, 7)
- 마) <삭 제>

나. 전공심사Ⅱ(공개강의): 30점

1)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①	강의계획의 적절성과 준비의 충실도(강의수준 및 완성도)	강의 주제와 강의 내용의 상관성	15점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의 완성도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확성	강의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강의 내용의 체계성, 설명의 적합성, 증명의 정확성	
②	강의의 능숙도 및 태도	강의 내용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15점
		자세, 억양, 제스처 등 자연스러운 표현능력	
	질문처리 능력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조리있게 답변하였는지 여부 청중들에 대한 배려, 교양과 품위	
합 계			30점

- 2) '강의계획서의 적절성과 준비의 충실도' 및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확성' 평가는 매우 우수(15점), 우수(13점), 보통(11점), 미흡(9점), 매우 미흡(7점)으로 평가한다.
- 3) '강의의 능숙도 및 태도' 및 '질문처리 능력' 평가는 매우 우수(15점), 우수(13점), 보통(11점), 미흡(9점), 매우 미흡(7점)으로 평가한다.
- 4) 심사위원별로 (서식 9-1)의 '평점' 란에 심사항목별 점수를 기재한다. 다만,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그 근거를 세부심사항목별로 '평가근거'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평균평점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서식 9, 10)
- 6) 평균평점 합계가 20점 미만인 응모자는 면접심사 추천대상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4. 심사진행

가. <삭 제>

나. 전공심사Ⅱ 대상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로 하며, 전공심사 I 심사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다. 전공심사Ⅱ에는 2차심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이 참관한다. 다만, 3차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초빙분야의 경우 3차심사위원회에서 공개강의 심사를 진행하며, 의무 참관인원은 없다.
- 라. 공개강의 주제는 초빙분야의 전공과 일치하는 주제로 정하며, 진행시간은 강의 및 질의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공개강의 대상자 1인당 30분 내외로 한다.
- 마. 초빙분야별 1차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개강의 심사계획서(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바. 청강자는 본교 소속 교원과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의 허가하에 진행시간의 범위내에서 질의에 참여할 수 있다.

5. 관련서식

가.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 서식

- ① 전공 일치도 심사결과 집계표 (서식 4)
- ② 전공 일치도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서식 4-1)
- ③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양적평가 심사결과 집계표(서식 5)
- ④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양적평가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서식 5-1)
- ⑤ 연구실적 질적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서식 6)
- ⑥ 학위논문 질적평가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서식 6-1)
- ⑦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질적평가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서식 6-2)
- ⑧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I 총괄 집계표 (서식 7)

나. 전공심사Ⅱ(공개강의) 서식

- ① 공개강의 심사 계획서 (서식 8)
- ② 공개강의 심사결과 집계표 (서식 9)
- ③ 공개강의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서식 9-1)
- ④ 공개강의 심사일정 등 진행현황 (서식 9-2)
- ⑤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I·Ⅱ 총괄 집계표 (서식 10)

② 전공심사위원회(2차심사위원회)

1. 구성

채용대상 학부(과) 소속 전임교원을 제외한 초빙분야와 관련 있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심사내용

전공심사위원회(1차심사위원회)의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 심사 결과

3. 심사방법

- 가. 심사위원별로 (서식 11-1)의 '심사결과'란에 1차심사위원회의 전공심사 I 심사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로 표시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평가할 경우 그 사유를 '부적정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나. 2차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의견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전원 일치되지 않을 경우 심사의견서 1부(서식 1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다. 2차심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전공심사Ⅱ(공개강의) 심사를 참관한다.

4. 심사진행

- 가. 2차심사위원회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초빙분야는 1차심사위원회에서 전공심사Ⅱ를 심사한다.
- 나. 2차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은 초빙분야는 채용공정심사위원회에서 1차·2차 심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1) 채용공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3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사 I·Ⅱ를 심사
 - 2) 채용공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1차심사위원회에서 전공심사Ⅱ를 심사

5. 관련서식

- ① 2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집계표(서식 11)
- ② 2차심사위원회 심사평정표(서식 11-1)
- ③ 2차심사위원회 의견서(서식 11-2)

③ 전공심사위원회(3차심사위원회)

1. 구성

- 가. 전공심사위원회(2차심사위원회)에서 전공심사위원회(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경우, 채용공정심사위원회에서 1차·2차 심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성한다.
- 나.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 5인 이상(1차·2차심사위원 제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로 인해 회피할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심사내용

- 가.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
- 나. 전공심사Ⅱ(공개강의)

3. 심사방법

전공심사위원회(1차심사위원회) 심사방법을 따른다.

4. 심사진행

전공심사위원회(1차심사위원회) 심사진행을 따른다.

5. 관련서식

전공심사위원회(1차심사위원회)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Ⅲ. 면접심사 및 심사위원회

1. 구성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해당 학장 및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2. 심사내용

가.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나. 교수로서의 잠재력과 학부(과) 발전 기여 가능성

3. 심사방법

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①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연구계획의 독창성 및 충실도	5점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	
	대학발전 및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구계획과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② 교수로서의 잠재력과 학부(과) (전공) 발전에 기여 가능성	품성 및 태도, 의사표현능력	5점
	전문가적 능력	
	학문적 발전 가능성	
	학부(과)(전공) 발전에 기여 가능성	
합 계		10점

나. 심사항목 평가는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으로 평가한다.

다. 심사위원별로 (서식 12-1)의 '평점' 란에 세부심사항목별 점수를 기재한다. 다만,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그 근거를 세부심사항목별로 '평가근거'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평균평점은 각 심사위원의 세부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서식 12, 13)

마. 평균평점 합계가 6점 미만인 응모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3. 심사진행

면접심사 대상자는 모집인원의 2배수로 하며,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 공개강의 심사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의 심사점수가 20점 미만인 응모자는 면접심사 추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4. 관련서식

- ① 면접심사 집계표 (서식 12)
- ② 면접심사 평정표(심사위원별) (서식 12-1)

5

신규임용 예정자 최종 결정

1. 최종 합격자는 전공심사 I (전공 일치도, 연구실적), 전공심사 II (공개강의),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전공심사 II, 전공심사 I 성적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여부 심사결과표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평가구분	기초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경력·학력과 제출서류 간 일치여부	일치
판정(합격, 불합격)	합격

1. 평가결과 란에는 '일치' 또는 '불일치'를 기재
2. 판정결과는 기초심사위원회에서 일치로 심사한 경우 '합격'으로 기재
3. 평가결과 불일치일 경우, 그 근거 사유를 "불일치 평가 사유란"에 기재

♣ 불일치 평가 사유 :

교무과 주무관 (인) 산학연구과 주무관 (인) 교무팀장 (인)
 기초심사위원회
 교무과장 (인) 교무부처장 (인) 교무처장 (인)

기초심사 총괄 집계표

□ 초빙학부(과)명 :

□ 초빙분야명 :

접수 번호	응모자 성명	출신대학(학사)	심사평정 내역		전공심사 I 대상자 (대상자는 ○로 표시)	비고
		출신대학(석사)	서식1	서식2		
			출신대학(박사)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합격	합격	○	

작성자(교무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전공 일치도 심사결과 집계표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초빙분야							
평가구분 (배점)	심사위원별 평점						평균 평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A) 이수교과목, 학력 및 경력에 의한 평가 (5점)	0.00						0.00
(B) 연구실적에 의한 평가 (5점)	0.00						0.00
판정(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평균평점 합계 (C=A+B)			0.00

1. 전공 일치도 개인별 심사평정표(서식 4-1)에 의한 각 심사위원의 평점을 심사위원별 평점란에 기재한 후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작성함.
2. 평균평점 및 평균평점 합계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균평점 합계가 6점 이상인 응모자를 "전공 일치"로 함

작성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전공 일치도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초빙분야			
담당예정 교과목	□ 학 부 :		
	□ 대학원 :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이수교과목, 학력 및 경력에 의한 평가	응모자의 대학, 대학원 이수교과목 중 초빙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의 관련도	5점	0.00
	응모자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졸업학과와 초빙분야 전공(학과)과의 일치여부		
	응모자의 최근 연구 경력 및 교육 경력과 초빙분야 전공(학과)과의 일치여부		
연구실적에 의한 평가	응모자의 최종학위논문내용과 초빙분야와의 관련정도	5점	0.00
	응모자의 연구실적내용과 초빙분야와의 관련정도		

1 각 항목별 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2. <삭 제>

☞ 평균평점 합계가 6점 이상인 응모자를 “전공 일치”로 함

1차심사위원 :

(인)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양적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삭 제>

구 분	심사위원별 평점						평균평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양적평가 (15점)	0.00						(0.00)점
환산평점							(0.00)점

1. 학위논문 외의 연구실적 양적평가 개인별 심사평정표(서식 5-1)에 의한 각 심사위원의 평점을 심사위원별 평점란에 기재한 후 평균평점을 산출
2. 평균평점 및 환산평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평균평점 = 심사위원별 평점 계 / 심사위원 수(심사위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 환산평점 = (평균평점/600)×15

<삭 제>

작성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양적평가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일련 번호	구분	연구실적물 제목	항 목				비고	
			저자 수	등급 점수 (a)	저자수 기준 인정률 (b)	연구 실적물간 중복도 심사 (c)		취득점수 (d=a×b×c)
							0.00	
합 계							0.00	
※ 저자 수 기준 인정률(b) 600%까지 평가			평점(취득점수) 계			(0.00)점		

1. 구분은 “논문” “지식재산권” “실기실적” 등으로 표시함
2. 등급점수(a): “Ⅱ. 전공심사”에 따름
3. 저자수 기준 인정률(b): “Ⅱ. 전공심사”에 따름(점수 부여방법: 100%=1, 80%=0.8, 70%=0.7.... 20%=0.2, 10%=0.1로 기재함)
4. 연구실적간 중복도 심사(c)
 - <삭 제>
 - 0.5~1.0 사이에서 0.1 단위로 점수 부여(단, 연구실적 중 초빙분야와 관련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주제 및 내용이 상호 지나치게 중복된 경우 실적을 제외시킬 수 있음)

☞ 저자 수 기준 인정률의 합이 600%를 초과할 경우 600%만 계산함

※ 연구실적 등급명 및 배점기준

구 분	등 급 명		배 점
논 문	전문학술지 A		100점
	전문학술지 B		75점
지식재산권	국제특허, 국제품종보호권 등록		100점
	국내특허, 국내품종보호권, 국제 실용실안, 국제 소프트웨어, 국제디자인 등록		75점
실기실적	실기실적A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별표2> 중 “실기분야 연구업적 평가기준”의 150점을 초과한 항목	100점
	실기실적B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별표2> 중 “실기분야 연구업적 평가기준”의 150점인 항목	75점

<삭 제>

1차심사위원 :

(인)

연구실적 질적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구 분 (배점)	심사위원별 평점						평균 평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학위논문 질적평가 (5점)	0.00						0.00
학위논문 이외 연구실적 질적평가 (30점)	0.00						0.00
합 계 (35점)							0.00

1. 학위논문 질적평가 개인별 심사평정표(서식 6-1), 학위논문 이외 연구실적 질적평가 개인별 심사평정표(서식 6-2)에 의한 각 심사위원의 평점을 심사위원별 평점란에 기재한 후 평균평점을 산출함
2. 각 심사위원별 평점, 평균평점, 합계란의 평균평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작성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학위논문 질적평가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구분 (석·박사)	논문 제목	배점	등급별 평 점	평 가 기 준
		5점	(0)점	1. 연구목적 2. 주제의 독창성 3. 내용의 충실도 4.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5. 논문내용과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학위논문 질적평가 평점 : (0) 점				

1. 구분은 박사 또는 석사로 표시함
2. 심사위원은 위 “평가기준”을 토대로 학위논문을 평가하여 등급(1, 2, 3, 4, 5등급)을 결정하여 등급별 평점(1등급 → 5점, 2등급 → 4점, 3등급 → 3점, 4등급 → 2점, 5등급 → 1점)을 등급별 평점란에 기입함

☞ <삭 제>

<삭 제>

1차심사위원 :

(인)

학위논문 의 연구실적 질적평가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일련 번호	논문 제목	등급	등급별 평점 (a)	저자수 기준 인정률 (b)	취득 점수 (c=a×b)	평가 기준
					0.00	1. 연구목적 2. 주제의 독창성 3. 내용의 충실도 4. 학문(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5. 논문(실기)내용과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합 계					0.00	
※ 저자수 기준 인정률(b) 200%까지 평가			학위논문 이외 연구실적 질적평가 평점(취득점수)		(0.00)점	

- 심사위원은 위 “평가기준”을 토대로 연구실적물을 평가하여 등급별 평점(1등급 → 10~15점, 2등급 → 5~10점)을 등급별 평점(a) 란에 기입
 ※ 연구실적물 평가 등급은 ‘Ⅱ. 전공심사’의 연구실적물 등급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에 의하여
 - 1등급: 전문학술지A, 국제특허, 국제품종보호권 등록, 실기실적A
 - 2등급: 기타 연구실적물
- 저자수 기준 인정률(b): “Ⅱ. 전공심사”에 따름(점수 부여방법: 100%=1, 80%=0.8, 70%=0.7... 20%=0.2, 10%=0.1로 기재함)

☞ <삭 제>

<삭 제>

1차심사위원 :

(인)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I 총괄 집계표

□ 초빙학부(과)명 :

□ 초빙분야명 :

접수 번호	응모자 성 명	출신대학(학사)	심사평정 내역							공 개 강의자 (대상자는 ○로 표시)	비고
		출신대학(석사)	서식1	서식2	서식4	서식5	서식6	합계 (60점)	득점 순위		
		출신대학(박사)	경력· 학력 제출 서류 일치	지원 자격	전공 일치도 (10점)	연구 실적 양적 (15점)	연구 실적 질적 (35점)				
			합격	합격	0.00	0.00	0.00	0.00			

작성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공개강의 심사 계획서

1. 초빙학부(과)명:
2. 공개강의 일시(시, 분 까지 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3. 1인당 강의 시간:
4. 공개강의 장소:
5. 공개강의 언어:
6. 공개강의 주제(지정주제):

1차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공개강의 심사결과 집계표

□ 공개강의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구 분 (배점)			전형위원별 평점						평균 평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①	강의계획의 적절성과 준비의 충실도 (강의수준 및 완성도)	15점	0.00						0.00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확성								
②	강의의 능숙도 및 태도	15점	0.00						0.00
	질문처리 능력								
합 계 (30점)									0.00

1. 심사위원별 평가에 대하여 교무과에서 집계 작성함.
 2. 공개강의 개인별 심사평정표 <서식 9-1>에서의 각 심사위원의 심사 항목별 평점을 심사위원별 평점란에 기재한 후 평균평점을 산출, 평균평점과 합계란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공개강의 총 평균평점이 20점 미만인 자는 면접심사 추천대상 부적격자로 처리함

작성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공개강의 심사평정표(심사위원별)

□ 공개강의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①	강의계획의 적절성과 준비의 충실도 (강의수준 및 완성도)	강의 주제와 강의 내용의 상관성	15점	0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의 완성도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확성	강의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강의 내용의 체계성, 설명의 적합성, 증명의 정확성		
②	강의의 능숙도 및 태도	강의 내용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15점	0
		자세, 억양, 제스처 등 자연스러운 표현 능력		
	질문처리 능력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조리 있게 답변하였는지 여부		
		청중들에 대한 배려, 교양과 품위		
합 계			30점	0
공개강의 평점 합 : (0) 점				
평가 근거	①			
	②			

1. “강의계획서의 적절성과 준비의 충실도”와 “설명의 적합성과 증명의 정확성” 평가는 매우 우수(15점), 우수(13점), 보통(11점), 미흡(9점), 매우 미흡(7점)으로 평가하고, “강의의 능숙도 및 태도”와 “질문처리 능력” 평가는 매우 우수(15점), 우수(13점), 보통(11점), 미흡(9점), 매우 미흡(7점)으로 평가함
 2.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시 반드시 그에 대한 근거를 평가항목 별로 평가 근거란에 기재함
- ☞ 공개강의 총 평균평점이 20점 미만인 자는 면접심사 추천대상 부적격자로 처리함

1차심사위원 :

(인)

공개강의 심사일정 등 진행현황

1. 초빙학부(과)명:
2. 일 시:
3. 장 소:
4. 공개강의 참석 대상자: ()명 ※ 참관 교수, 대학원생 등 인원
5. 개인별 강의현황

발표자명	강 의 주 제	소요 시간	강의시각	비 고
			~	
			~	

1. 비고란에는 질의 및 응답내용, 질문자 수 등 특이사항을 기재

<삭 제>

1차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2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집계표

초빙학부(과)명 :

초빙분야명 :

응모자 성 명	1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위원 수 표시)		부 적 정 사 유
	적정	부적정	

작 성 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2차심사위원회 심사평정표

□ 응모자명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심사부문	심사결과(○로 표시)		부적정사유
	적정	부적정	
1	전공 일치도		
2	연구실적		

- 1차심사위원회가 수행한 심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사부문별로 적정성 여부를 기재 함
- 심사가 적정할 경우는 “적정”에, 부적정할 경우는 “부적정”에 ○표를 함
- “부적정” 표시한 부문에 대해서는 “부적정” 사유란에 부적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함
 - ☞ 전형 후, 2차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의견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전원 일치 되지 않을 경우 심사의견서 1부(서식 11-2)를 작성하여 제출

2차 심사위원:

(인)

2차심사위원회 의견서

초빙학부(과)명 :

초빙분야명 :

♣ 심 사 의 견 :

1. 2차심사위원회 심사 후, “1차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적정함” 등의 2차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술
2. 1차 전공심사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적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함
3. 2차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적정” 하다고 판정한 경우 의견 제출 생략 가능
(채용시스템에 심사위원 각자 제출한 의견으로 대체)

2차
심사위원회

(인)

(인)

(인)

면접심사 집계표

□ 면접심사 대상 :

□ 초빙학부(과)(분야)명 :

평가항목 (배점)	심사위원별 평점						평균 평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①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5점)	0.00						0.00
② 교수로서의 잠재력과 학과 (전공) 발전에 기여 가능성 (5점)	0.00						0.00
합 계 (10점)							0.00

1. 면접심사 개인별 심사평정표에 의한 각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점을 심사위원별 평점 란에 기재한 후 평균평점을 산출. 평균평점과 합계란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면접평가에 대하여 교무과에서 집계 작성한다.

☞ 면접심사 결과 평균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작 성 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면접심사 평정표(심사위원별)

□ 면접심사 대상 :

□ 초빙학부(과)(분야)명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①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연구계획의 독창성 및 충실도	5점	0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		
		대학발전 및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구계획과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② 교수로서의 잠재력과 학과(전공)발전에 기여 가능성		품성 및 태도, 의사표현능력	5점	0
		전문가적 능력		
		학문적 발전 가능성		
		학과(전공) 발전에 기여 가능성		
면접심사 평점 합 (10점)		(0)점		
평가	①			
근거	②			

1. 각 항목의 평가는 배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심사항목은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 전형위원이 각 평가항목을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시 반드시 그 감점에 대한 근거를 평가항목 별로 제시함

☞ 면접심사 결과 평균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면접심사위원 :

(인)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평정 최종 집계표

□ 초빙학부(과)명 :

□ 초빙분야명 :

접수 번호	응모자 성 명	출신대학(학사)	심 사 평 정 내 역							취득 점수 합계 (100점)	득점 순위	비고
		출신대학(석사)	출신대학(박사)	서식1 경력· 학력 제출 서류 일치	서식2 지원 자격	서식4 전공 일치도 (10점)	서식5 연구 실적 양적 (15점)	서식6 연구 실적 질적 (35점)	서식9 공개 강의 (30점)			
				합격	합격	0.00	0.00	0.00	0.00	0.00	1	

작 성 자(교 무 처) : (인)

전형관리위원장(교무처장) : (인)

서 약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위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 20 학년도 제 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
심사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와 심사를 할 것이며, 심사대상자와 특수한 관계
(연구실적물 공저자, 석사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친·인척, 그 밖에 심사위원
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를 회피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사실 및 심사 결과를 다른 심사위원은 물론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
며,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서약인

(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귀하